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3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 강득구·강준현·김기표

김영환 · 김정호 · 김준혁

송재봉 · 오세희 · 윤종오

이학영 · 임광현 · 채현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 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승강기, 크레인 등 근로자 및 시설물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 2. 수중. 지하 및 갱도 등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3. 선로나 삭도 등 궤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작업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탱크 및 특정설비 등 고압 가스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제167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안전조치)	① ~	3	(생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
				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
				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
				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강기, 크레인 등 근로자
				및 시설물의 추락 위험이 있
				<u>는 작업</u>
				2. 수중, 지하 및 갱도 등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u>작업</u>
				3. 선로나 삭도 등 궤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
				른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
				<u>는 작업</u>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탱크 및 특정설비

④ (생략)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8조제1항부터 <u>제3항까지</u>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등 고압가스 관련 설비의 설
치 및 유지, 보수 작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작업
<u></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7조(벌칙) ①
제4항까지
② (현행과 같음)
제168조(벌칙)
1제4항까지-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 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 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 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한 자

2. (생략)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 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 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u>제4항까지</u>
- _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